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5차 법제사법위원회

2025년도 감사원 소관 예산안 검 토 보 고

▣ 일 반 회 계

2024. 11.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전문위원 박 동 찬

목 차

제1장 개 요 / 1

1. 총 괄	1
2. 세입예산안 현황	3
3. 세출예산안 현황	4

제2장 세부사업별 검토의견 / 6

1. 인건비 : 집행 실적을 고려한 감액 조정 필요	6
가. 편성 현황	6
나. 집행 실적을 고려한 감액 조정 필요	7
2. 감사활동경비-일반수용비 : 공공기관 회계감리 전문가 자문 등 자문료 감액 조정 필요 등	12
가. 편성 현황	12
나. 공공기관 회계감리 전문가 자문 등 자문료 감액 조정 필요	14
다. 연례적 집행 부진 등이 발생하는 '감사원 SNS, 블로그 운영 등' 감액 조정 필요	20
3. 감사활동경비 - 일반연구용역비 : 연구용역사업 예산 일부 비목 조정 필요	23
가. 편성 현황	23
나. 연구용역사업 예산 일부 비목 조정 필요	24

4. 적극행정 지원 : 증액 취지에 맞는 적극적인 사업 추진 필요	28
가. 편성 현황	28
나. 증액 취지에 맞는 적극적인 사업 추진 필요	29
5. 노후시설 개보수 및 업무시설 정비 : 공사비 규모의 적정성 검토 필요	34
가. 편성 현황	34
나. 에너지 저장장치(ESS) 설치 공사 사업 관리 철저 필요	35
다. 공사비 예산 적정규모 산정 필요	40
6. 전산운영경비(정보화) : 차세대 업무포털시스템(OASYS) 구축 관련 예산의 면밀한 관리 필요 ..	46
가. 편성 현황	46
나. 차세대 업무포털시스템(OASYS) 구축 관련 예산의 면밀한 관리 필요	48
7. 국제교류협력강화 : 국제기구 외부감사인 진출 추진 관련 국외업무여비 감액조정 필요	55
가. 편성 현황	55
나. 국제기구 외부감사인 진출 추진 관련 국외업무여비 감액조정 필요	56
8. 감사기구 역량강화(ODA) : 면밀한 산출을 통한 일반용역비 규모의 적정성 검토 필요	61
가. 편성 현황	61
나. 면밀한 산출을 통한 일반용역비 규모의 적정성 검토 필요	62

제1장 개 요

1. 총 괄

- 2025년도 감사원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는 세입예산 7억 7,000만원, 세출예산 1,507억 6,200만원임.
- 세입 예산은 전년도 예산 7억 4,500만원의 3.4%에 해당하는 2,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1,461억 6,700만원의 3.1%에 해당하는 45억 9,500만원이 증액됨.

<2025년도 감사원 소관 예산안 개요>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3결산	2024예산		2025예산안		증 감	
		본예산(A)	추경	요구	조정(B)	B-A	%
세입	731	745	745	748	770	25	3.4
세출	132,762	146,167	146,167	167,543	150,762	4,595	3.1

- 감사원이 당초 예산당국에 요구한 2025년도 세출예산은 1,675억 4,300만원이었으나, 인건비에서 17억 8,100만원, 기본경비에서 9억 3,700만원, 주요사업비에서 140억 6,300만원을 각각 감액하는 것으로 조정된 결과, 총 1,507억 6,200만원으로 예산안이 편성되었음.

<2025년도 감사원 소관 세출예산안 조정 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예산		2025예산안		증 감 (B-A)
	본예산	추경	요구(A)	조정(B)	
합 계	146,167	146,167	167,543	150,762	△ 16,781
인건비	94,182	94,182	100,775	98,994	△ 1,781
기본경비	13,451	13,451	14,768	13,831	△ 937
주요사업비	38,534	38,534	52,000	37,937	△ 14,063

2. 세입예산안 현황

- 2025년도 감사원 소관 세입예산안은 총 7억 7,000만원으로 이는 전년도 예산 7억 4,500만원 대비 3.4%(2,500만원)가 증액된 것임.
- 세입예산안의 편성내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교육수수료 등 수입대체경비수입 6억 1,800만원, 국제형사재판소 외부감사 수수료 수입 1억 700만원, 여비 반납금 및 공공요금 관리계좌의 이자수입 등 경상이전수입 3,000만원, 토지 및 건물 대여료 등 재산수입 1,500만원이 각각 계상됨.

<2025년도 세입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 예산		2025년 예산안 (B)	증 감		내 역
	본예산 (A)	추경		금액 (C=B-A)	비율 (C/A)	
합 계	745	745	770	25	3.4	
수입대체경비수입	600	600	618	18	3.0	교육수수료, 시설사용료 수입
재화및용역판매수입	104	104	107	3	2.9	국제형사재판소 외부감사 수수료 수입
경상이전수입	30	30	30	-	-	여비 반납금 및 이자수입 등
재산수입	11	11	15	4	36.4	토지대여료: 1 건물대여료: 14

3. 세출예산안 현황

○ 2025년도 총 세출예산안은 1,507억 6,200만원으로, 이는 전년도 예산 1,461억 6,700만원 대비 3.1%(45억 9,500만원)가 증액된 것임.

- 2025년도 감사원 소관 세출예산안을 사업별로 보면,

인건비는 전년도 예산 대비 5.1% 증액(48억 1,200만원)된 989억 9,400만원이 계상됨.

기본경비는 전년도 예산 대비 2.8% 증액(3억 8,000만원)된 138억 3,100만원이 계상됨.

주요 사업비는 감사활동경비 169억 1,400만원, 적극행정 지원 3억 3,500만원, 노후시설 개보수 및 업무시설 정비 20억 1,200만원, 전산운영경비 161억 1,100만원, 국제교류협력강화 10억 6,200만원, 감사기구 역량강화 2억 9,200만원, 감사교육원 수입대체경비 6억 7,600만원, 감사연구활동경비 5억 3,5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1.5% 감액(△5억 9,700만원)된 379억 3,700만원이 계상됨.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인건비 48억 1,200만원(5.1%), 기본경비 3억 8,000만원(2.8%), 전산운영경비 2억 4,600만원(1.6%), 감사교육원 수입대체경비 1억 200만원(17.8%)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주요 감액사업으로는 감사활동경비 2,400만원(△0.1%), 노후시설 개보수 및 업무시설 정비 12억 2,800만원(△37.9%)이 각각 감액되었음.

<2025년도 세출예산안 사업별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 예산		2025년 예산안 (B)	증 감	
		본예산(A)	추경		금액 (C=B-A)	비율 (C/A)
합계		146,167	146,167	150,762	4,595	3.1
인건비		94,182	94,182	98,994	4,812	5.1
기본경비		13,451	13,451	13,831	380	2.8
주요 사업 비	소계	38,534	38,534	37,937	△597	△1.5
	감사활동경비	16,938	16,938	16,914	△24	△0.1
	적극행정 지원	263	263	335	72	27.4
	노후시설 개보수 및 업무시설 정비	3,240	3,240	2,012	△1,228	△37.9
	전산운영경비	15,865	15,865	16,111	246	1.6
	국제교류협력강화	854	854	1,062	208	24.4
	감사기구 역량강화	292	292	292	-	-
	수입대체경비	574	574	676	102	17.8
	감사연구활동경비	508	508	535	27	5.3

제2장 세부사업별 검토의견

1. 인건비 : 집행 실적을 고려한 감액 조정 필요

가. 편성 현황

□ ‘인건비(1101-151)’는 「공무원 보수규정」,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기타 개별 법령에 따라 공무원에게 급여 및 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경비로서, 예산 규모는 총 989억 9,400만원임. 보수 및 연가보상비로 구성되어 있고, 전년 대비 48억 1,200만원(5.1%)이 증액 편성되었음.

○ 주요 증액 사유는 정원 증가(48명 증원) 및 공무원 보수 인상률(3.0%) 등임.

<2025년도 인건비 예산안>

(단위: 백만 원, %)

사 업 명	2023년 예산		2024년 예산		2025 예산안	증감 (B-A)	(B-A)/ A
	예산현액	집행액	예산현액	집행액 (8월말 기준)			
인건비	92,533	89,022	94,182	61,924	98,994	4,812	5.1
· 보수(110-01)	91,815	88,284	93,453	61,912	98,202	4,749	5.1
· 연가보상비(110-05)	718	718	729	12	792	63	8.1

* 자료 : 감사원

나. 집행 실적을 고려한 감액 조정 필요

□ 최근 3년간 감사원의 인건비 집행률은 2021년 97.8%, 2022년 96.8%, 2023년 96.2%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 불용액 규모 면에서도 2021년도 19억 8,700만원, 2022년도 28억 7,000만원, 2023년도 35억 3,100만원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

<최근 4년간 감사원 인건비 결산내역>

(단위: 백만 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B)	집행액 (8월말기준) (C)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1	89,716	-	89,716	-	-	89,716	87,729	97.8	-	1,987
2022	90,715	△143	90,572	-	-	90,572	87,702	96.8	-	2,870
2023	92,533	-	92,533	-	-	92,533	89,002	96.2	-	3,531
2024	94,182	-	94,182	-	-	94,182	61,912	65.7	-	-

* 각 연도 집행액은 연도말 기준, 2024년도 집행액은 8월말 기준

** 자료 : 감사원

□ 2024년 8월 말 현재까지 집행액은 619억 2,400만원으로, 집행률은 65.7%임.

□ 2022년도 및 2023년도 감사원의 세출예산의 성질별 결산내역을 살펴보면, 2022년도 전체 예산 1,354억 4,400만원, 2023년도 1,389억

4,900만원 중 약 70%가 (인건비성 경비와 물건비성 경비로 구분한 것으로 본 예산 외에 개별 사업에 편성된 인건비가 포함됨) 인건비성 경비에 해당하는데, 불용액은 각각 30억 6,700만원, 36억 9,700만원으로 해당 회계연도 불용액의 46%, 74%를 차지하고 있음.

<2022년 및 2023년도 세출예산 성질별 결산 내역>

(단위: 백만 원, %)

구 분	예산 현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2022	2023	2022	2023	2022	2023	2022	2023
인건비	94,368 (69.7)	96,412 (69.4)	91,031 (71.8)	92,715 (69.8)	- -	- -	3,067 (46.0)	3,697 (73.7)
물건비	37,016 (27.4)	35,823 (25.8)	32,374 (25.5)	34,435 (25.9)	1,249 (79.7)	239 (20.4)	3,424 (51.3)	1,149 (22.9)
이전지출	935 (0.7)	1,023 (0.7)	929 (0.7)	1,017 (0.8)	- -	- -	6 (0.1)	7 (0.1)
자산취득	3,095 (2.3)	5,691 (4.1)	2,600 (2.0)	4,595 (3.5)	319 (20.3)	930 (79.6)	176 (2.6)	166 (3.3)
계	135,444 (100.0)	138,949 (100.0)	127,204 (100.0)	132,762 (100.0)	1,568 (100.0)	1,168 (100.0)	6,672 (100.0)	5,019 (100.0)

* 자료 : 감사원

□ 최근 감사원 인력의 정원 대비 현원을 살펴보면, 2021년과 2022년 말 기준 각각 43명과 75명의 결원이 발생하였고, 2023년도 말에도 결원이 63명이었음. 감사원은 2024년 1월부터 8월까지 59명을 충원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4년 8월 말 현재 정원 대비 84명이 부족한 실정임¹⁾.

1) 감사원은 2024년도 1월 직제 개정으로 48명을 증원하여 2024년도 정원은 1,128명임.

< 최근 4년간 감사원 정원 및 현원 현황 >

(단위: 명)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8월말
정원	1,080	1,080	1,080	1,128
현원	1,037	1,005	1,017	1,044

* 자료 : 감사원

□ 한편, 감사원의 결원에 따른 인건비 집행률 문제에 대해서는 인건비를 대폭 증액한 2018년 예산안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음.

2018년도 인건비 예산안 편성 시 결원을 하향 조정 및 공무원 보수 인상률²⁾ 등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6.2%를 증액하였으나, 인건비 불용액은 43억 1,600만원으로 대폭 증가하였고, 집행율은 95% 수준으로 예년 대비 감소하였음. 이는 당초 계획과 달리 결원율이 축소되지 않음에 따른 것으로 보임.

<2017년-2020년(4년간) 인건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불용액
	본예산	추경(A)						
2017	81,434	81,434		81,434	80,147	98.4	98.4	1,287
2018	86,500	86,500		86,500	82,184	95.0	95.0	4,316
2019	87,071	87,071	△325	86,746	83,943	96.4	96.8	2,813
2020	87,671	86,573		86,573	85,047	98.2	98.2	1,526

* 자료 : 감사원

2) 2018년도 예산안 심사 당시 공무원 보수 인상률은 2.6%이었음.

<2017년-2020년(4년 간) 감사원 정원 및 현원 현황>

(단위: 명)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정원	1,080	1,080	1,080	1,080
현원	1,051	1,032	1,068	1,067

* 자료 : 감사원

□ 2019년도에는 정원 1,080명과 현원 1,068명으로 그 격차가 12명으로 상당히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률이 96.4%로 전년 대비 크게 개선되지 않았음. 이는 2018년도 당시 6.2% 수준의 인건비 인상이 영향을 주었던 것으로 볼 수 있음.

□ 결국, 2018년도에 인건비를 6.2% 증액 후 2년 만인 2020년도에야 비로소 집행률이 98% 수준으로 상승하였으나, 실제로는 2020년도 추경예산에서 인건비를 18년도 수준인 865억 7,300만원으로 감액 조정하였기 때문이었음.

< 2017년-2020년(4년 간) 감사원 인건비 집행액 증가율 및 공무원처우개선율>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집행액	80,147	82,184	83,943	85,047
집행액 증가율	-	2.5	2.1	1.3
공무원 처우개선율 ³⁾	3.5	2.6	1.8	2.8

* 자료 : 감사원

3)

공무원처우개선율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3.8	3.0	3.5	2.6	1.8	2.8	0.9	1.4	1.7	2.5

출처: 인사혁신처 『민·관 보수수준 실태조사』 결과 편집, e나라지표
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021

□ 인건비는 의무지출성 경비로서 신규 증원 없이 종전의 인원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경비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어 전체 예산의 모수(母數)를 키워 다음 연도 예산증가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고, 타 비목으로 전용이 엄격히 제한되는 인건비⁴⁾를 과다 편성할 경우 불용액을 그 회계연도 중 필요한 다른 곳에 활용하지 못하게 되어 예산의 비효율적 집행을 초래하게 됨. 인건비 비중이 큰 감사원의 경우 그 우려가 크다고 볼 수 있음.

□ 참고로, 2022년도 결산 심사 시에도 “정원 대비 결원 인원의 증가는 최근 3년간 인건비 집행률의 감소(2020년 98.2% → 2022년 96.8%) 및 불용액 증가 추세로 이어지고 있어 예산의 효율적 배분 및 활용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한 바 있음.

□ 따라서 감사원은 정원과 현원의 격차에 따른 불용액 증가 및 집행률 감소 등 과거 집행 실적과 내년도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인건비 인상률 수준의 축소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4)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1) 인건비의 지급근거

가) 인건비의 집행은 반드시 법령에 지급근거가 있어야 하며 지급대상, 지급액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

(2) 인건비와 타 비목간 전용 최소화

2. 감사활동경비-일반수용비 : 공공기관 회계감리 전문가 자문 등 자문료 감액 조정 필요 등

가. 편성 현황

- ‘감사활동경비(1111-251)’ 중 일반수용비(210-01)는 감사백서 등 발간비, 정책자문위원회 등 회의경비, 자체감사기구 지원·개선 등, 감사활동의 전문성 및 신뢰성 강화, 현지출장 감사반 운영비, 감사지원 정부청사연락사무소 운영비, 감사활동 관련 홍보비, 명예민원상담관 활동비로 구성되고,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도 예산액 17억 5,000만원보다 2억 9,100만원이 증액(16.6%)된 20억 4,100만원이 편성되었음.
- 내역사업 ‘감사활동의 전문성 및 신뢰성 강화’의 경우 전문가 자문료, 정보이용, 시험·검사, 통계분석 등 감사자료 취득 관련 비용, 감사능력개발 및 감사전문지휘역량 강화 지원, 회계감사 수행능력 강화 지원, 법률지원시스템 가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도 예산액 6억 600만원 대비 3억 5,100만원 증액(57.9%)된 9억 5,700만원임.
- 내역사업 ‘감사활동 관련 홍보비’는 ‘감사활동 관련 대외 광고 홍보비’와 ‘감사원 SNS, 블로그 운영 및 홍보 책자 발간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4년도 예산과 동일한 1억 4,900만원임.

< 2025년도 감사활동경비-일반수용비 편성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 예산		2025년 예산안(B)	증감	
	본예산(A)	추경		금액(B-A)	비율(%)
○ 일반수용비(210-01)	1,750	1,750	2,041	291	16.6
- 감사백서 등 발간비	243	243	233	10	△4.1
- 정책자문위원회 등 회의경비	103	103	103	0	0
- 자체감사활동 지원·개선 등	160	160	160	0	0
- 감사활동의 전문성 및 신뢰성 강화	606	606	957	351	57.9
- 현지출장 감사반 운영비	351	351	301	△50	△14.2
- 감사지원 정부청사 연락사무소 운영비	43	43	43	0	0
- 감사활동 관련 홍보비	149	149	149	0	0
- 명예민원상담관 활동비	95	95	95	0	0

* 자료 : 감사원 제출 자료

나. 공공기관 회계감리 전문가 자문 등 자문료 감액 조정 필요

- 공공기관 회계기관 자문 등은 기 작성된 공공기관의 재무제표 및 감사보고서에 대하여 감사원이 수행하는 결산검사의 전문성 보강 및 사각지대 방지를 위하여 민간 회계전문가를 회계감리(監理)⁵⁾ 전 과정에 참여시키고 자문료를 지급하려는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안에 3억 3,000만원이 신규로 반영되었음.

<2025년도 공공기관 회계감리 전문가 자문 등 편성내역>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 예산		2025년 예산안(B)	증감	
	본예산(A)	추경		금액(B-A)	비율(%)
○ 감사활동의 전문성 및 신뢰성 강화	606	606	957	351	57.9
- 공공기관 회계감리 전문가 자문 등	-	-	330	330	순증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 제43조6)에 따른

- 5) 회사의 경영진이 작성한 재무제표, 외부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 등을 검토하여 회계처리기준 및 회계감사기준의 준수 여부 등을 조사·확인하는 업무
- 6) 제43조(결산서의 제출) ① 공기업·준정부기관은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회계연도의 결산서를 작성하고,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선임한 회계감사인(이하 “회계감사인”이라 한다)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공기업·준정부기관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회계감사인에게 결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이하 “회계법인”이라 한다)
 2.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나목에 따른 감사반(이하 “감사반”이라 한다)
- ② 공기업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준정부기관은 주무기관의 장에게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 제1항에 따라 작성된 다음 각 호의 결산서를 각각 제출하고, 4월 10일까지 승인을 받아 결산을 확정하여야 한다. 다만, 주주총회나 출자자총회 등 사원총회가 있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우에는 사원총회에서 결산을 의결·확정한다.
1. 재무제표(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서를 포함한다)와 그 부속서류

공공기관에 대한 행정부 내부 결산 절차를 보면, 공기업·준정부기관은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에는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를 회계감사인에 제출하여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고, 그 이후에 공기업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준정부기관은 주무기관의 장에게 3월 15일까지 결산서를 제출하여 4월 10일까지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후 기획재정부장관과 주무기관의 장은 5월 15일까지 확정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결산서 등을 감사원에 제출하고, 결산서 등을 제출받은 감사원은 그 중 「감사원법」 제22조제1항제3호7)에 따른 법인과 그 밖에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결산서등을 검사하고 그 결과를 7월 1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⁸⁾

- 2007년 공운법 제정 이후 감사원은 매년 25개 내외의 공기업·준정부기관⁹⁾의 결산서 등에 대한 회계감리를 실시하여 왔으나,

2.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③ 기획재정부장관과 주무기관의 장은 매년 5월 15일까지 제2항에 따라 확정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결산서와 그 밖에 필요한 서류(이하 이 조에서 “결산서등”이라 한다)를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결산서등을 제출받은 감사원은 그 공기업·준정부기관 중 「감사원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법인과 그 밖에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결산서등을 검사하고, 그 결과를 7월 1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회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는 회계법인과 감사반의 선정 기준 및 회계감사의 절차,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감사원의 결산감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감사원규칙으로 정한다.

7) 제22조(필요적 검사사항) ① 감사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한다.

3. 한국은행의 회계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법인의 회계

8) 감사원의 결산서등의 검사 행위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재무제표 및 감사보고서에 대하여 검토하고 회계처리기준 및 회계감사기준의 준수 여부 등을 조사·확인하는 회계감리라고 할 수 있음.

9) 감사원은 「감사원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법인의 회계에 대해서는 검사를 하여야 하나, 그 외의 공기업·준정부기관에 관하여 공운법 및 감사원규칙 등에서는 감사원의 회계감리 대상을 한정하고 있지 아니함. 이에 따라 감사원은 2023년에는 25개의 기관(감사원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검사 대상기관 22개, 감사원 자체 지정기관 3개), 2024년에는 28개의 기관(감사원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검사 대상기관 19개, 감사원 자체 지정기관 9개)을 대상

주무부처의 낮은 관심과 공공기관의 회계에 관한 감사원의 전문성과 인력 부족 등으로 인하여 결산 검사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측면¹⁰⁾이 있음.

- 이에 감사원은 2025년부터 87개 공기업·준정부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회계 감리 등 사업을 확대하기 위하여 2024년 1월 감사원사무처 직제를 개정하여 제1사무차장 소관으로 공공재정회계감사국을 신설하였고, 2024년 5월 상시적인 회계감리 체계를 준비하고 공공기관 회계 통제 기반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공기관 회계감리체계 구축방안」을 마련하였음.
- 감사원은 부족한 회계전문성과 인력을 보강하기 위하여 회계감리 전 과정에서 민간전문가를 활용하기로 하고, 2025년도 예산안에 이를 반영하였음. 구체적인 산정 내역을 보면, 민간 회계전문가와 자문계약을 체결하기로 하되, 기존에 진행하던 ‘상반기 결산 검사’에는 7명의 회계전문가를 28개의 기관을 대상으로 기관당 10일간 투입하고, 2025년부터 수행할 예정인 ‘하반기 회계처리 적정성 점검’¹¹⁾에는 약 12명의 회계전문가를 59개의 기관을

으로 결산 검사를 실시하였음.

- 10) 이연법인세 부채 과소인식 등으로 3,943억원 당기순이익과대계상(‘18, 철도공사), 이연법인세 자산 과다인식 등으로 698억원 당기순손실 과소계상(‘19, 석유공사) 등 회계오류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였고, 감사원의 회계감리 대상이 아닌 공기업·준정부기관의 회계 감사보고서 작성 등에 대한 신뢰성 확보가 미흡한 측면이 있었음.
- 11) 하반기에 실시될 ‘회계처리 적정성 점검’은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하여 회계감리를 실시하는 업무로서 상반기 결산검사와 본질적으로 동일하나, 상반기 결산검사의 경우 공운법 제43조제4항에 따라 감사원이 결산검사의 결과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반면 하반기 ‘회계처리 적정성 점검’의 경우 감사원의 결산검사의 결과를 외부 기관에 제출할 의무가 없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대상으로 기관당 5일간 투입하는 방식으로 계산하였다고 설명¹²⁾하고 있음.

<2025년도 공공기관 회계감리 전문가 자문 등 예산 산정내역>

- 총 자문료: 575일 × 8시간 × 72,000원 = 330,000,000원
 (= 7명 × 4개 × 10일 × 8시간 × 72,000원 + 11.8명 × 5개 × 5일 × 8시간 × 72,000원)
- 8시간: 회계전문가 인원 1일 당 근무시간
 - 72,000원: 공공기관의 회계감사 계약 시간당 단가 평균 106,120원의 70%로 시급 산정

구 분	합 계	결산검사 대상 (상반기)	회계처리 적정성 점검 대상 (하반기)
전문가 투입 인원	18.8명	7명(1명당 4개)	11.8명(1명당 5개)
공기업·준정부기관	87개	28개	59개
기관당 투입 일수	-	10일	5일
전체 투입 일수	575일	280일	295일

* 자료 : 감사원 제출 자료

○ 이 사업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먼저, 감사원은 87개 공기업·준정부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상시적인 회계 감리 등 사업을 확대하고자 하고 있으나, 공공기관에 대한 회계 감리 품질 확보와 기존의 사업 실적을 고려하여 일부 감액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공운법 및 「공공기관의 회계감사 및 결산감사에 관한 규칙」

등에서는 감리대상 선정, 감리방법 등 구체적인 절차와 기준에

12) 이에 따르면, 자문계약을 체결한 민간회계전문가는 상반기 결산검사의 경우 1인당 평균 4개 기관에 대하여 약 40일을, 하반기 회계처리 적정성 점검의 경우 1인당 평균 5개 기관에 대하여 약 25일을 근무하게 됨.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음¹³⁾. 따라서 그간에 공공기관의 회계감리에 대해서는 감사원 내부의 관심이 적은 상태에서, 표준적인 업무절차 없이 소수 직원이 개인 역량에 의존하여 해당 기관을 개략적으로 점검하는 수준으로 운영하는 등 체계적으로 추진·관리되지 못하고 있었음.

- 또한, 공공기관의 회계감리를 전담하는 부서는 신설된 공공재정 회계감사국 산하의 재정회계3과인데, 소속 인력의 정원은 9명에 불과하여 추후 확대되는 업무에 대해서는 민간 회계전문가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임. 이 경우 민간 회계전문가가 부적절하게 감리업무를 수행한 경우 그 책임성 확보와 나아가 회계 감리의 품질을 담보하는 것도 어려울 수 있음. 따라서 기존 25개 내외의 기관에 대해서도 결산검사가 충실하게 실시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를 87개 전체기관으로 확대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바, 추진 가능한 수준으로 사업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다음으로, 본 사업 예산안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일시적·소규모 적으로 발생하는 속기, 자문 등에 대한 수수료 및 사례금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수용비로 편성되었는바, 동 사업은 비교적 장기간이고 감사원이 수행하는 감리업무에 전문가를 활용하는 방식이라는

13) 공운법에서는 감사원이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한 결산검사를 하도록 하면서, 회계감사, 결산검사와 관련한 사항은 감사원규칙으로 위임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른 「공공기관의 회계감사 및 결산감사에 관한 규칙」에는 재무제표 및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사원의 검토 권한을 규정하고 있음.

측면에서 예산 항목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이에 대하여 감사원은 대다수의 우수한 회계사들이 현재 회계법인에 고용되어 있는 상태에서 감사원에 중복해서 고용될 수 없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고려하여 선택한 방식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 그러나, 향후 활용 계획에 따르면 민간 회계전문가는 기관별 재무제표 사전 분석·검토와 감리현장에서의 자료분석, 회계감사 조서 분석 등¹⁴⁾ 실질적인 감리업무를 수행할 것으로 보이는 바, 이는 자문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인지 그 판단이 불분명할 수 있다는 점, 편성지침은 다른 비목에 해당하는 경비는 일반수용비로 편성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그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14) 회계감리 전문가 활용 개요, 감사원 제출 자료

다. 연례적 집행 부진 등이 발생하는 ‘감사원 SNS, 블로그 운영 등’
감액 조정 필요

- ‘감사원 SNS, 블로그 운영 및 홍보책자 발간 등’은 ‘감사활동 관련 홍보비’의 내내역사업으로, 감사원이 대외 홍보를 위하여 SNS, 블로그 운영 및 감사원 소개책자 발간 등에 사용되며 2025년도 예산안에는 2,6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25년 ‘감사원 SNS, 블로그 운영 및 홍보책자 발간 등’ 예산 산출근거 >

예산액	산출근거
26,000천원	○ 블로그 운영비 4,000천원 ○ 감사원 소개자료 9,500천원 ○ 출생미신고 아동 관련 감사홍보를 위한 홍보영상 편집(영문 등) 5,500천원 ○ 기타 운영비 7,000천원

* 자료: 감사원

- 최근 3년간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2022년도에는 예산액 2,250만원 중 1,459만원을 집행하였고(집행률 약 64.8%) 2023년도에는 예산액 2,640만원 중 1,303만원을 집행(집행률 약 49.4%)하였으며 2024년도 10월1일 기준 예산액 2,600만원 중 1,294만원 집행(집행률 약 49.8%)하는 등 집행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보임.

**<최근 3년간 감사활동경비 중 ‘감사원 SNS, 블로그 운영 및
홍보책자 발간 등’ 집행내역>**

(단위: 천원)

연도	예산액	집행액	홍보내용
2022년	22,500	14,586	○ 블로그 운영비(글꼴 및 이미지 구매 등) 3,960천원 ○ 감사원 소개책자(2,000부) 10,626천원 ○ 집행 잔액 7,914천원은 감사지 등에 사용
2023년	26,400	13,028	○ 블로그 운영비(글꼴 및 이미지 구매 등) 3,993천원 ○ 감사원 소개책자 수정 2,200천원 ○ 홍보노트(800개) 6,835천원 ○ 집행 잔액 13,372천원은 대외광고홍보비와 감사지 등에 사용
2024년	26,000	12,936	○ 블로그 운영비 1,386천원 ○ 출생미신고 아동 관련 감사홍보를 위한 홍보영상 제작 선금 11,550천원

주) 2024. 10. 1. 기준

* 자료: 감사원 제출자료

- 한편, 감사원의 홍보예산은 그동안 예산집행 과정에서 당초 편성과 다르게 집행되는 등의 문제로 국회 예산·결산 심사 과정에서 지적받은 바 있음.

2015년에는 사업의 예산 전액을 당초 편성되지 않은 ‘홈페이지 개선사업’으로 집행하였고, 2016년에도 당초 계획되지 않았던 ‘소명제도 홍보동영상 제작’에 2,000만원을 집행하였음.

- 최근에도 유사한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데, 2022년, 2023년에는 2년

연속으로 집행 잔액을 감사지 제작에 사용¹⁵⁾하였고, 2024년도에는 당초 계획되지 않았던 ‘출생미신고 아동 관련 감사홍보를 위한 홍보영상제작’의 선금으로 전체 예산액의 약 44%인 1,156만원을 집행하였음.

- 따라서 당해 예산안은 다소 과다하게 편성된 측면이 있으므로 목적이 불분명하거나 집행 수준이 저조한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감액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15) ‘감사’지는 감사인들의 역사와 이야기를 담은 감사 전문지로서, 감사지 발간비는 2022년, 2023년에 각각 1억 170만원, 9,666만원이 감사활동경비의 일반수용비(210-01) 중 ‘감사백서 등 발간비’의 내역사업으로 이미 편성되어 있는 상태였음.

3. 감사활동경비 - 일반연구용역비 : 연구용역사업 예산 일부 비목 조정 필요

가. 편성 현황

- ‘일반연구용역비(260-01)’는 감사활동과 관련된 연구용역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예산으로 16억 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이는 전년 대비 약 1억원(△5.9%) 감액 편성된 것임.

< 2025년도 일반연구용역비 편성내역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 예산		2025년 예산안(B)	증 감	
	본예산(A)	추경		금액(B-A)	비율(%)
○ 일반연구용역비(260-01)	1,700	1,700	1,600	△100	△5.9
- 주요 감사사항 및 감사업무 관련 연구용역	500	500	500	0	0
- 국가재무제표 결산검사 보조업무 용역	1,200	1,100	1,100	△100	△8.3

* 자료: 감사원 제출 자료

- 일반연구비(260-01) 중 ‘주요 감사사항 및 감사업무 관련 연구용역’ 내역사업에 5억원, ‘국가재무제표 결산검사 보조업무 용역’ 내역사업에 11억원이 각각 편성되어 있음.

나. 연구용역사업 예산 일부 비목 조정 필요

○ 감사원의 과거 ‘감사활동경비-일반연구비’ 집행 내역을 살펴보면, 정책연구용역의 성격을 가진 연구용역사업이 수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감사원이 최근 3년간 일반연구비로 수행한 연구용역사업 중 약 15건이 감사원의 구성·운영이나 감사활동 개선 방안 등에 관한 연구로 볼 수 있고 집행액은 총 4억 5,300만원임.

<최근 3년간 일반연구비로 집행한 정책연구 성격의 연구용역>

(단위: 백만원)

연번	연도	구 분	금액
1	2022	院-자체감사기구간 역할분담 방안 연구	85
2		적극행정 지원을 위한 감사책임 감면제도 연구	34
3		재심의 제도개선 관련 연구	27
4		경제발전 단계에 따른 감사원의 대응전략 연구	29
5		디지털 전환 시대의 국민참여 감사제도 운영방안 연구	29
6		내부통제 관련 심사지표 측정 방안 연구	20
7		감사수요 발굴을 위한 외부 비정형 데이터 분석 방법 연구	44
10	2023	공공부문 내부통제 가이드라인 개발 연구	40
11		감사원 사전컨설팅 신청자격 확대 필요성 분석 연구	20
12		감사원과 자체감사기구 간 협력 연계 방안 및 사례 연구	50
13	2024	신산업 분야 인력수급전망 및 정책개선 기초자료 연구	35
14		인공지능의 자연어처리 기능을 활용한 감사접근방법 및 해외 감사사례 연구	20
15		공공기관 회계감사 품질 제고 방안 연구	20
계			453

주) 2024. 10. 1. 기준

* 자료 : 감사원 제출 자료

-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작성 세부지침」(이하 ‘예산 편성지침’)에 따르면, 연구용역비(260목)는 일반연구비(260-01)와 정책연구비(260-02)로 구분하고, 정책 개발을 위해 추진하는 정책 연구용역 관련 비용은 정책연구비로 편성하도록 하고 있음.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작성 세부지침에 따른 구분>

연구용역비(260목)	
일반연구비(260-01목)	정책연구비(260-02목)
○ 국가로부터 기술, 평가, 자문 및 시운전, 실태조사, 전산개발, 임상연구 등 지식 기반의 업무에 대한 용역 비용 - 기술용역 : 과학기술을 응용하여 사업 및 시설물의 계획, 연구, 설계, 분석, 조사, 구매, 조달, 시험, 감리, 시운전, 평가, 자문, 지도, 산업관리 등을 행하는 경우의 용역 - 전산용역 : 행정업무의 전산화와 관련한 Data 입력, Software 개발 등을 행하는 경우의 용역 - 임상연구용역 : 국립병원, 교도소 등 국가기관에서 의료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임상연구 - 기타 연구용역 : 실태조사, 자료제작 등 일상적인 조사·연구 관련 제반 용역	○ 각 부처에서 정책 개발을 위해 추진하는 정책연구용역(학술연구 포함) 관련 비용 - 과학기술·생산기술 및 정책개발에 관한 연구,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협의회(세미나, 간담회 등) 개최 등의 제반 용역과 계약직 연구원(in-house think-tank)의 보수 등 관련 경비 포함

- 2021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국회 심사시 ‘감사활동경비’ 연구용역 사업 중 일반연구비로 집행할 연구과제와 정책연구비로 집행할 연구과제를 정확히 분류하여 적정한 비목으로 예산을 편성·집행하여야 한다는 시정요구가 있었음.¹⁶⁾

1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2021회계연도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결산 예비심사보고서」, 2022. 8.

○ 그러나 2023년도 예산안에는 정책연구비 비목 없이 전년도와 동일한 금액의 일반연구비가 편성되었고,

이에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사시 ‘주요 감사사항 및 감사업무 관련 연구용역’ 내역사업에 편성된 일반연구비 중 정책연구 성격의 연구용역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정책연구비로 비목을 조정하여 편성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음.¹⁷⁾

- 이러한 지적에 대하여, 감사원은 2024년도 예산안 편성시 일반연구비 일부를 정책연구비로 편성할 예정’이라고 답변한 바 있음.¹⁸⁾

○ 그러나 감사원은 2024년도 예산 편성시 ‘감사활동경비’의 연구용역비는 전액 일반연구비로만 편성하였고, 2025년에도 동일하게 전액 일반연구비로 편성하였음.

○ 한편, 현재 감사연구원의 정책연구용역에 대하여는 연구과제·연구자 등을 선정할 때 감사연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과제담당관이 연구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연구결과를 평가하며 결과의 활용상황을 점검하여 감사연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 내부적 검증 및 환류의 과정을 거치도록 하고 있음.

- 반면, 감사활동경비의 연구용역에 대하여는 이러한 내부적 검증 및 환류 과정이 제도화되어있지 않는바 정책연구용역이 보다 용이하게 진행될 우려가 있어 보임.

1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2023년도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2022. 10.

18) 「감사원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Ⅱ-1)」, p.42, 2024. 8.

- 한편, 최근 일반연구비로 집행한 정책연구 성격의 연구용역 중에서는 유사한 연구주제에 대해서 연도를 달리하여 수의계약을 통하여 진행되는 사례가 있었음.

<최근 유사한 연구주제에 대하여 두 차례 실시한 연구용역 사례>

연구주제	연구기간	계약명	집행액 (단위: 천원)	계약상대자	계약방식
감사원과 자체감사기구간 역할분담 및 협력 방안	2022. 4. 25.~ 2022. 11. 25.	院-자체감사기구 간 역할분담 방안 연구	85,000	○○○○ 학회	수의계약
	2023. 7. 26.~ 2023. 12. 26.	감사원과 자체감사기구 간 협력 연계 방안 및 사례 연구	50,000	○○○○ 학회	수의계약
내부통제 가이드라인	2022. 9. 28.~ 2022. 11. 28.	내부통제 관련 심사지표 측정 방안 연구	20,000	한국내부통제 학회	수의계약
	2023. 4. 5.~ 2023. 8. 4.	공공부문 내부통제 가이드라인 개발 연구	39,700	한국내부통제 학회	수의계약

- 따라서 감사원은 국회의 시정요구와 관련 규정을 고려하여, 동 사업에 편성된 일반연구비 중 정책연구 성격의 사업은 정책연구비로 비목을 조정하여 편성할 필요가 있음.

4. 적극행정 지원 : 증액 취지에 맞는 적극적인 사업 추진 필요

가. 편성 현황

- ‘적극행정 지원(1131-304)’ 사업은 적극행정면책, 사전컨설팅, 모범사례 발굴 등의 적극행정 지원제도를 통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공직사회 분위기를 유도하고 수감자의 권익보호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도 예산액 2억 6,300만원보다 7,200만원이 증액(27.4%)된 3억 3,5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25년도 적극행정 지원 편성내역>

(단위: 백만원, %)

사 업 명	2023년도 결산	2024년도 예산		2025년도 예산안		증 감	
		본예산	추경(A)	요구	조정(B)	(B-A)	%
적극행정 지원	316	263	263	459	335	72	27.4

사 업 명	2023회계연도 결산			2024년도 예산	2025년도 예산안
	예산현액	집행액	불용액		
○ 비목별 분류	341	316	25	263	335
- 일반수용비(210-01)	123	123	-	115	138
- 일반용역비(210-04)	54	54	-	60	60
- 국내여비(220-01)	71	49	22	57	106
- 국외여비(220-02)	62	61	1	-	-
- 관서업무추진비(240-02)	6	6	-	6	6
- 포상금(310-03)	25	24	1	25	25

* 자료 : 감사원

나. 증액 취지에 맞는 적극적인 사업 추진 필요

- 2025년도 예산액의 증액 내역을 살펴보면, 적극행정면책자문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일반수용비 2,300만원이 증액되었고, 사전컨설팅 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국내여비 5,100만원 증액되었음.¹⁹⁾
- 일반수용비와 국내여비의 구체적인 증액 사유는 다음과 같음.
 - 일반수용비는 ① 면책신청 건수 증가로 인하여 적극행정면책자문위원회²⁰⁾ 개최 횟수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② 모범공직자 등 선발을 위한 모범공직자 및 모범부서·기관 선발심사위원회²¹⁾ 개최 횟수도 연간 2회로 확대실시할 예정이므로 증액이 필요함.

2024년도 예산 산출내역	2025년도 예산안 산출내역
○ 적극행정면책자문위원회: 25백만원 가. 회의경비 등(1백만원) · 10회x10만원=1백만원 나. 자문료(20백만원) · 10회x40만원x5명=20백만원 다. 감사권익보호관 지원 경비(1백만원) · 10회x10만원=1백만원 라. 모범공직자 및 모범부서·기관 선발심사위원회 심사비(3백만원) · 1회x50만원x6인=3백만원	○ 적극행정면책자문위원회: 48백만원 가. 회의경비 등(1.5백만원) · 15회 x10만원=1.5백만원 나. 자문료(37.5백만원) · 15회 x50만원x5명=37.5백만원 다. 감사권익보호관 지원 경비(3백만원) · 15회 x20만원=3백만원 라. 모범공직자 및 모범부서·기관 선발심사위원회 심사비(6백만원) · 2회 x50만원x6인=6백만원

19) 모범사례 발굴 및 추진실태 점검을 위한 국내여비 200만원 감액되어 2025년 예산액은 총 7,200만원 증액

20) 「적극행정면책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적극행정면책을 신청한 사항이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제36조에 따른 면책기준에 부합하는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자문한다.

21) 「감사원 모범공직자 및 모범부서·기관 선발에 관한 규칙」

제3조(모범공직자 및 모범부서·기관 선발심사위원회의 설치) 모범공직자 및 모범부서·기관 선발의 심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감사원에 모범공직자 및 모범부서·기관 선발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이라 한다)를 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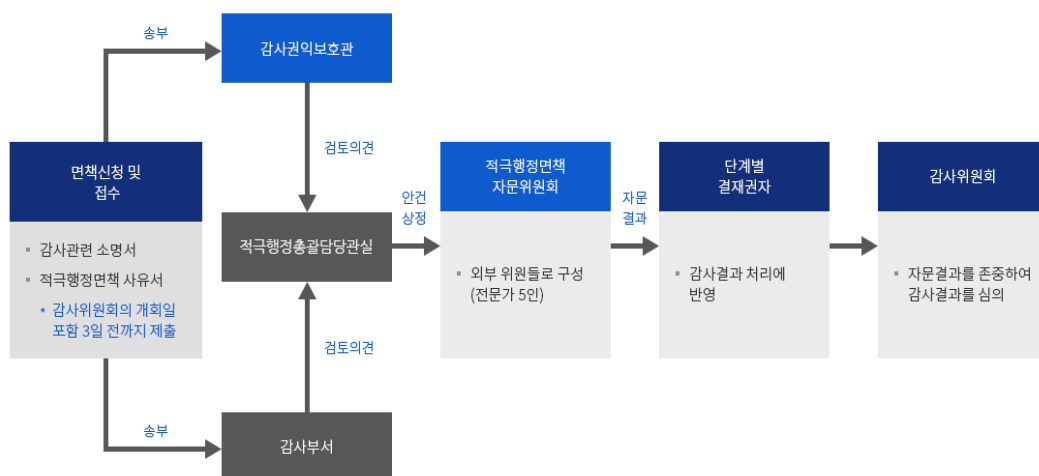
1. 표창 대상 모범공직자 및 모범부서·기관의 공적조서에 의한 공적
2. 모범공직자 및 모범부서·기관 추천 규모
3.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국내여비는 자체감사기구에 대한 적시지원 및 컨설팅 활성화를 위하여 ‘찾아가는 사전컨설팅’을 기존 연간 3회에서 6회로 확대 실시할 예정이므로 증액이 필요함.

2024년도 예산 산출내역	2025년도 예산안 산출내역
○ 모범사례 발굴 및 사전컨설팅처리: 57백만원	○ 모범사례 발굴 및 추진실태 점검: 55백만원 · 서울 11인×15일×2만원= 3.3백만원 · 수도권 11인×16일×7만원= 12.2백만원 · 지방 11인×33일×11만원= 40백만원
	○ 사전컨설팅 처리 : 51백만원 · 서울 12인×3일×6회×2만원= 4백만원 · 수도권 12인×3일×6회×7만원= 15백만원 · 지방 12인×4일×6회×11만원= 32백만원

- 우선 일반수용비 증액에 관하여 살펴보면, 적극행정면책자문위원회 개최 횟수는 적극행정면책자문위원회의 기능(적극행정면책을 신청한 사항이 면책기준에 부합하는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자문)을 고려할 때 면책신청 건수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 할 것임.

<신청에 의한 면책 심의·검토 절차>



- 그런데 최근 4년간 신청면책(신청에 의한 면책) 처리 실적과 적극 행정면책자문위원회 운영 실적을 살펴보면, 2025년 실적이 예년 실적 수준을 상회할 것이라고 예측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2025년 면책신청 건수 증가로 인하여 적극행정면책자문위원회 개최 증가가 예측된다는 예산 증액 사유는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 최근 4년간 신청면책 처리는 매년 20건을 넘지 않는 수준이고, 2024년 8월 현재 실적도 7건이라는 점에서 2025년 실적이 예년 실적을 크게 상회할 것이라고 예측하기는 무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²²⁾
 - 최근 4년간 적극행정면책자문위원회 운영 실적 역시 신청면책 처리 건수가 20건으로 제일 많았던 2023년에 8회를 개최한 것이 최고실적으로, 매년 10회를 넘지 않는 수준이고(4년 평균 6.5회 개최), 2024년 8월 현재 역시 3회가 개최되었다는 점에서 2025년 적극행정면책자문위원회를 최근 4년 평균 개최 횟수의 2배가 넘는 수준(2025년 15회 개최 예정)으로 개최할 필요성이 있는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22) 면책신청 접수 건수의 경우 2021년 28건, 2022년 21건, 2023년 28건, 2024년 10월 말 현재 24건임 (자료: 감사원).

<최근 4년간 신청면책 처리 및 적극행정면책자문위원회 운영 실적>

연도	신청면책 건수	회의개최 횟수	자문결과	최종감사결과
2020년	13건	6회	인정 1건, 불인정 11건, 인정/불인정 동수 1건	- 인정 1건 → 불인정 1건 - 인정/불인정 동수 → 불인정 ※ 나머지는 자문결과와 동일
2021년	13건	7회	인정 2건, 일부인정 5건, 불인정 6건	- 인정 2건 → 불인정 1건, 일부인정 1건 ※ 나머지는 자문결과와 동일
2022년	8건	5회	인정 1건, 일부인정 2건, 불인정 5건	- 인정 1건 → 불인정 1건 - 일부인정 1건 → 불인정 1건 ※ 나머지는 자문결과와 동일
2023년	20건	8회	인정 2건, 일부인정 3건, 불인정 15건	- 인정 1건 → 일부인정 1건 - 일부인정 1건 → 불인정 - 불인정 2건 → 종결 1건, 미시행 1건 ※ 나머지는 자문결과와 동일
2024년 8월	7건	3회	인정 0건, 일부인정 1건, 불인정 6건	- 불인정 3건 → 일부인정 2, 미시행 1건 ※ 나머지는 자문결과와 동일

* 자료 : 감사원

- 다음으로 국내여비 증액과 관련하여, 사전컨설팅 활성화를 위한 ‘찾아가는 사전컨설팅’ 확대 실시를 증액 사유로 제시하고 있으나 ‘찾아가는 사전컨설팅’ 확대 실시가 사전컨설팅 활성화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함.
- 최근 4년간 사전컨설팅 실적과 ‘찾아가는 사전컨설팅’ 실시 횟수를 살펴보면, 2020년 ~ 2022년 ‘찾아가는 사전컨설팅’을 매년 1회 실시한 결과 50건 ~ 84건의 사전컨설팅이 접수되었으나 2023년 3회 실시로 접수된 사전컨설팅은 76건, 2024년 8월 현재 4회 실시로 접수된 사전컨설팅은 40건이라는 점에서 ‘찾아가는 사전

컨설팅’ 확대 실시로 인하여 사전컨설팅 실적이 유의미하게 상승하였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사전컨설팅 실적 및 ‘찾아가는 사전컨설팅’ 실시 횟수>

연도	찾아가는 사전컨설팅 실시 횟수	총 접수	완 료					검토 중
			인용	기각	반려	취하	의견제시	
2020년	1회	84건	46	6	26	6	-	-
2021년	1회	74건	40	5	6	18	5	-
2022년	1회	50건	27	3	10	10	-	-
2023년	3회	76건	42	2	11	12	9	-
2024년 8월	4회	40건	13	-	5	4	2	16

* 자료 : 감사원

○ 다만, 복잡다변화되는 행정환경 속에서 업무 결과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그에 따라 공직자들이 부담하는 위험이 역시 증가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적극행정 지원사업 예산의 선제적 증액을 통하여 적극행정 면책제도와 사전컨설팅 제도를 활성화하고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공직문화를 조성하려는 취지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감사원은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통하여 행정효율성을 제고하려는 이 사업 예산의 증액 취지가 달성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이고 실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등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5. 노후시설 개보수 및 업무시설 정비 : 공사비 규모의 적정성 검토 필요

가. 편성 현황

□ ‘노후시설 개보수 및 업무시설 정비(1133-309)’ 사업은 청사 및 노후시설물의 정비를 통하여 감사활동에 적합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세부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도 예산 32억 4,000만원 대비 12억 2,800만원(△37.9%) 감액된 20억 1,200만원이 편성되었음.

주요 증감 내역은 24년도 완료 예정인 ‘감사인력 운용 개선을 위한 근무환경 개선사업’ 예산(21억 4,000만원) 순감소 및 에너지 저장장치(ESS) 설치 등 본원 노후시설 성능개선에 6억 1,500만원 증액 등임.

<2025년도 노후시설 개보수 및 업무시설 정비 편성내역>

(단위: 백만원, %)

사 업 명	2023년 결산	2024년 본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B-A)/A
노후시설 개보수 및 업무시설 정비(1133-309)	3,411	3,240	2,012	△1,228	△37.9

* 자료 : 감사원 제출 자료

나. 에너지 저장장치(ESS) 설치 공사 사업 관리 철저 필요

□ 감사원은 2025년도에 ‘에너지 저장장치(ESS) 설치’ 등 본원 시설개선을 위한 예산으로 11억 3,800만원을 편성하였음.

□ ‘에너지 저장장치(ESS) 설치’ 사업에는 7억 3,300만원을 계상되었음.

에너지 저장장치(Energy Storage System)는 생산된 전기를 저장 장치(배터리)에 저장 후 전력이 필요할 때 공급하여 전력사용 효율을 향상시키는 설비로서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11조 제5항 및 부칙 제3조²³⁾는 공공기관 중 계약전력이 1,000kW 이상의 기존 건축물은 계약전력 5% 이상 규모의 에너지저장장치(ESS)를 2025. 12. 31.까지 설치를

23)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11조(고효율에너지기자재 사용) ① 에너지기자재의 신규 또는 교체 수요 발생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및 「건축용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 또는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을 우선 구매하여야 한다. 다만,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 또는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이 없는 경우에는 차상위 에너지효율등급 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은 해당 기관이 소유한 건축물의 실내 조명기기를 별표 6의 연도별 보급목표에 따라 LED 제품으로 교체 또는 설치하여야 하며, 지하주차장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정부방침에 의거 기관의 이전계획이 있는 경우 해당 건축물은 제외하며, 초·중·고교, 도서관 등은 자체 위원회 결정에 따라 교체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③ 공공기관은 가로등, 보안등, 터널등(지하차도등 포함)을 신규로 설치하거나 등기구 교체 시에는 제1항에 의한 조명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은 신축, 증축, 개축 시 신규 설치하는 지하 주차장의 조명기기는 모두 제1항에 의한 LED 또는 스마트 LED 제품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⑤ 공공기관은 전력피크 저감 등을 위해 계약전력 2,000kW 이상의 건축물에 계약전력 5% 이상 규모의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부 칙 <제2023-161호, 2023.08.0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공기관 ESS 설치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건축허가 신청일이 2023.8.1. 이후인 건축물에 대하여 적용하고, 건축허가 신청일이 2023.7.31. 이전인 건축물은 2025.12.31.까지 설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3조(공공기관 ESS 설치의무에 관한 경과조치) 제11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전력 1,000kW 이상 2,000kW 미만의 기존 건축물(건축허가 신청일이 2023.7.31. 이전인 건축물)은 2025.12.31.까지 설치를 완료하여야 하여야 한다.

완료하도록 의무화하고 있고, 이에 따라 감사원은 2025년도 예산안에 에너지 저장장치(ESS) 설치를 위한 경비를 반영하였음.

- 참고로,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에 따른 공공기관의 에너지 저장장치(ESS) 설치 의무에 관하여 살펴보면, 2013년도 도입 당시에는 설치를 권고하는 수준이었으나, 2016년도부터 설치가 의무화되면서 설치 완료 기한을 20년도 말까지로 설정하였음. 이후 설치 완료 기한이 23년 말, 25년 말로 2차례 연장되었음.

<공공기관의 에너지 저장장치(ESS) 설치 의무 제도 개요>

시행일자	내 용	
'13.6.28.	권 고	○ 계약전력 1MW 이상 공공건물에 100kW 이상 ESS 설치
'15.7.30.		○ 계약전력 1MW 이상 공공건물에 계약전력 5% 이상 ESS 설치
'16.5.27.	의 무	○ 계약전력 1MW 이상 공공건물에 계약전력 5% 이상 ESS 설치 - (기존 건축물) 계약전력 규모별 단계적으로 설치(~'20년말) - (신축 건축물) '17년 이후 공공건물, 준공시 설치
'20.8.20.		○ 기존 건축물의 ESS 설치완료 기한을 '23.12.31.까지 연장
'23.8.1.		○ 계약전력 2MW 이상 공공건물에 계약전력 5% 이상 ESS 설치 - (기존 건축물) '23.7월 이전 공공건물로 '25.12.31.까지 설치 - (신축 건축물) '23.8월 이후 공공건물로, 준공시 설치 ○ 1MW 이상 2MW 미만 기존 건축물의 ESS 설치완료 기한을 '25.12.31.까지 연장 ○ 면제대상 건축물 구체적으로 명시, 면제 필요시설 추가

출처: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 에너지 저장장치(ESS) 설치의무화제도 가이드 라인 1p.

□ 감사원의 경우 본관 및 제4별관(제1별관 포함)은 계약전력이 각각 1,000kW 이상이므로 대상이 되고, 에너지 저장장치(ESS) 설치 공사에 필요한 예산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음.

<감사원 시설물 중 에너지 저장장치 설치 의무 대상 내역>

구 분	본 관	제2별관	제3별관	제4별관 (제1별관포함)
계약전력(kW)	1,500	100	618	1,900
설치 의무	○	×	×	○

* 자료 : 감사원 제출 자료

<2025년 예산안 중 ‘에너지 저장장치(ESS) 설치 공사’ 세부 내역>

(단위: 천원)

비 목	산 출 근 거	예산액
설시설계비 (420-02)	654,575(공사비)×3.83%(전기부문 설계비 효율)=25,070	25,070
공사비 (420-03)	관급자재비: (256,013×1대)+(208,273×1대)=464,286(나라장터종합쇼핑몰) 공사비: 190,289×1식(견적서)	654,575
감리비 (420-04)	285,820원/일(고급감리원)×22일×7.79인×월(전기부문 감리비 효율)× 1월 = 48,984(감리비 효율에 직접 인건비 등을 계산하여 원가계산)	48,984
시설부대비 (420-05)	654,575(공사비)×0.69%(시설부대비 효율)=4,517	4,517
합 계		733,000

* 자료 : 감사원 제출 자료

□ 그런데 감사원은 2019년도 예산안에는 에너지 저장장치(ESS) 설치 공사 비용을 이미 편성한 바 있음.

<2019년도 에너지 저장장치 설치(ESS) 예산내역>

세사업 명	예 산
· 감사교육원 생활관 리모델링 공사	- 설계비 202백만 원, 공사비 617백만 원, 감리비 11백만 원, 시설부대비 4백만 원, 자산취득비 26백만 원
· 감사원 어린이집 설치	- 설계비 44백만 원
· 기타 노후시설 개보수 등	- 수변전설비 교체공사(공사비) 368백만 원 -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공사(공사비) 318백만 원 - LED 교체공사(공사비) 135백만 원 - 민원동 옥상 방수공사(공사비) 153백만 원 - 식당 분전반 등 교체공사(공사비) 44백만 원 - 교육원 대형버스 교체(자산취득비) 184백만 원 - 체력단련실 헬스기구 교체(자산취득비) 20백만 원

* 자료 : 감사원 제출 자료

□ 그러나 2019회계연도 결산을 보면 감사원은 실제로 에너지 저장장치(ESS) 설치 공사 목적으로 편성되었던 예산 3억 1,800만원 전액을 감사활동비의 일반연구비로 전용하였음.

○ 감사원은 그 사유에 대하여 감사활동 관련 연구용역비 예산이 부족하여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 공사비를 사용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음.

<2019년도 결산 중 이·전용 등 세부내역>

(단위: 백만 원)

구분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단위사업-세부사업)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단위사업-세부사업)	목-세목 코드	
전용	노후시설 개보수 및 업무시설 정비 (1133-309)	공사비 (420-03)	318	감사활동경비 (1131-303)	일반 연구비 (260-01)	감사활동 관련 연구용역 예산이 부족하여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ESS(에너지저장장치) 설치 공사비를 전용
전용	노후시설 개보수 및 업무시설 정비 (1133-309)	공사비 (420-03)	80	기본경비 (1111-251)	관리 용역비 (210-15)	최저임금 등 물가상승으로 인하여 감사교육원 청사관리용역비 예산이 부족하여 전용
조정	노후시설 개보수 및 업무시설 정비 (1133-309)	공사비 (420-03)	5	노후시설 개보수 및 업무시설 정비 (1133-309)	감리비 (420-04)	수변전설비 교체공사 관련 감리비 예산이 부족하여 공사비를 감리비로 조정

* 자료 : 감사원 제출 자료

□ 한편, 감사원의 2022년도 「합리적인 에너지저장장치(ESS) 의무 설치기준 운영 필요」 감사결과보고서는 “ESS 설치가 곤란하거나 활용도가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관에서 의무 설치 규정에 의해 ESS를 무리하게 설치한 후 미가동하거나, 2023년 예산에 반영하여 설치를 계획하고 있는 등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집행될 우려가 있었다”고 지적하고 있음.

□ 그런데 감사원은 ESS 설치 완료 기한이 2025년 말로 다가옴에 따라 ESS 설치 사업을 재추진하려고 하고 있는바, 2025년도에는 사업 계획을 면밀히 수립하고 사업이 계획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다. 공사비 예산 적정규모 산정 필요

□ ‘노후시설 개보수 및 업무시설 정비(1133-309)’는 본원 노후시설 등 성능개선, 교육원 노후시설 등 성능개선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비목별로는 일반수용비, 관리용역비, 공사비, 자산취득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그 중 공사비 예산은 2023년도에는 전체 사업비 45억 4,600만원 중 22억 5,900만원으로 50%, 2024년도에는 32억 4,000만원 중 20억 3,100만원으로 63%, 2025년도에는 20억 1,200만원 중 15억 400만원으로 75%를 점유하고 있음.

<‘노후시설 개보수 및 업무시설 정비(1133-309)’ 편성내역>

(단위: 백만 원)

구 분	2023 예산	2024 예산	2025 예산안
○ 비목별 분류(합계)	4,546	3,240	2,012
· 일반수용비(210-01)	217	158	-
· 임차료(220-07)	1,096	-	-
· 관리용역비(210-15)	272	308	316
· 실시설계비(420-02)	121	120	53
· 공사비(420-03)	2,259	2,031	1,504
· 감리비(420-04)	17	30	49
· 시설부대비(420-05)	14	12	7
· 자산취득비(430-01)	549	581	83

* 자료 : 감사원 제출 자료

□ 노후시설 개보수 및 업무시설 정비(1133-309) 사업의 2023년 결산 및 2024년도 7월말 현재 집행 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2023년도 및 2024년도 ‘노후시설 개보수 및 업무시설 정비(1133-309)’ 집행내역>

(단위: 백만 원)

구 분	2023 결산					2024('24.7월말)					2025 예산안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예산 현액	집행액	
노후시설 개보수 및 업무시설 정비 (1133-309)	4,546	4,514	3,411	930	173	3,240	4,170	1,836	3,240	940	2,012

* 자료 : 감사원 제출 자료

□ 2023년도에는 전체 사업비 45억 4,600만원 중 34억 1,10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이 75% 수준이었고, 2024년도는 7월 말 현재 전년도 이월액을 제외한 예산현액 32억 4,000만원 중 9억 4,000만원이 집행되어 집행률이 29%에 불과함.

□ 이는 본 사업 예산 중 비중이 큰 공사비의 집행이 저조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

<2023년도 및 2024년도 공사비 집행내역>

(단위: 백만 원)

구 분	2023 결산					2024('24.7월말) 집행현황					2025 예산안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예산 현액	집행액	
노후시설 개보수 및 업무시설 정비 (1133-309)	4,546	4,514	3,411	930	173	3,240	4,170	1,836	3,240	940	2,012
· 공사비(420-03)	2,259	1,540	778	703	59	2,031	2,634	904	2,031	231	1,504

* 자료 : 감사원 제출 자료

□ 2023년도에 공사비는 22억 5,8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 중 32%에 해당하는 7억 1,900만원은 다른 비목으로 전용하였고, 31%에 해당하는 7억 3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실제 집행액은 7억 7,800만원으로 집행률이 34%이었음.

□ 그런데 낮은 집행률은 2024년도에도 확인됨.

□ 2024년도에 공사비는 20억 3,1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7월 현재 공사비 집행액은 9억 400만원이고, 전년도 이월액 7억 300만원을 제외하면 예산현액 20억 3,100만원 중 2억 3,100만원이 집행되어 집행률이 11% 수준에 그침.

<2023년도 및 2024년도 중 공사비 이·전용 등 세부내역>

(단위: 백만 원)

연도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2023	전용 (‘23.7.7.)	노후시설 개 보수 및 업무 시설정비 (1133-309)	공사비 (420-03)	430	노후시설 개 보수 및 업무 시설정비 (1133-309)	자산취득비 (430-01)	새롭게 형성될 국별 통합 사무공간에 기존 가구는 노후화 및 규격이 상이하 여 재배치시 한계. 그런데 현재 사무용 가구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아 전용
	전용 (‘23.10.30.)	노후시설 개 보수 및 업무 시설정비 (1133-309)	공사비 (420-03)	289	노후시설 개 보수 및 업무 시설정비 (1133-309)	임차료 (210-07)	제1별관 재건축 준공일에 맞춰 ‘23년 10월까지 사무실 임 차료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레미콘 수급 불안정 등 공 사 지연으로 준공일이 ‘24 년 3월로 연기됨에 따라 임차기간 연장이 불가피하 여 임차료 예산이 부족
2024	전용 (‘24.5.22.)	노후시설 개 보수 및 업무 시설 정비 (1133-309)	공사비 (420-03)	100	노후시설 개 보수 및 업무 시설 정비 (1133-309)	자산취득비 (430-01)	2024년 조직개편에 따라 신설(증원)된 공공재정회 계감사국의 사무용가구 구 매를 위한 재원 마련

* 자료 : 감사원 제출 자료

□ 2025년도에 공사비는 15억 400만원으로 전년도 20억 3,100만원 대비 5억 2,700만원 감액 편성되었으나, 실제로 2024년도에 편성되었던 ‘감사인력 운용 개선을 위한 근무환경 개선사업’이 종료됨에 따른 공사비 15억 700만원의 순감소를 감안한다면 2024년도 대비 10억 1,200만원이 증액된 것임.

<2025년 예산안 공사비 편성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 예산	2024 예산	2025 예산안
노후시설 개보수 및 업무시설정비(1133-309)	4,546	3,240	2,012
· 공사비(420-03)	2,259	2,031	1,504
· 제1별관 재건축에 따른 사무실 임차료 등 공사비(420-03)	602	-	-
· 본원 노후시설 등 성능개선 - 공사비(420-03)	323	320	1,046
· 교육원 노후시설 등 성능개선 공사비(420-03)	420	204	458
· 감사인력 운용 개선을 위한 근무환경 개선사업 공사비(420-03)	913	1,507	-

* 자료 : 감사원 제출 자료

□ 2025년도에 편성된 공사비는 15억 400만원은 전액 ‘본원 노후시설 등 성능개선’ 및 ‘교육원 노후시설 등 성능개선’ 공사를 목적으로 편성한 것으로, 세부내역은 냉온수기, 전등 등 설비의 교체공사와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 공사 등 감사원 본원 및 교육원의 시설공사를 계획하고 있음.

<본원 노후시설 등 성능개선 및 교육원 노후시설 등 성능개선 공사비 편성 세부내역>

2023년도	2024년도	2025년도(안)
1. 본원 노후시설물 성능개선공사 가. 제1별관 재건축에 따른 본원 내 기존시설 원상복구 및 보수 • 303,000,000원*1= 303,000천원 2. 교육원 노후시설물 성능개선공사 가. 기계실 MCC판넬 교체 • 62,942,000원*1= 62,942천원 나. 공기조화기 등 교체 및 자동제어 공사 • 217,768,000원*1= 217,768천원 다. 감사교육원 남녀 공동욕실 환경개선 공사 • 139,070,000원*1= 139,070천원	1. 본원 노후시설물 성능개선공사 가. 위험수목 제거 및 대체수목 식재 공사 • 174,900,000원*1= 174,900천원 나. 제3별관 ALTS 및 고압케이블 교체 공사 • 40,986,000원*1= 40,986천원 다. 제3별관 야외주차장 및 진입로 바닥 보수공사 • 104,336원/m*1,000㎡= 104,336천원 2. 교육원 노후시설물 성능개선공사 가. 노후 차단기 교체공사 • 26,940,000원*1식=26,940천원 나. 본관동 등 옥상방수 • 94,882,000원*1식=94,882천원 다. UPS배터리 교체 등 • 15,180,000원*1식=15,180천원 라. 구내식당 조리실 바닥 개선 • 11,697,000원*1식=11,697천원 마. 본관동 온실 누수 개선 • 55,000,000원*1식=55,000천원	1. 본원 노후시설물 성능개선공사 가. 제2별관 흡수식 냉온수기 교체공사 • 243,000,000원*1식=243,000천원 나. 본관 터보냉동기 분해점검 • 54,153,000원*1식=54,153천원 다. 본관 5~8층 LED 전등 교체공사 • 209,904원*450개=94,457천원 라.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 공사 • 3,740,429원*175kw=654,575천원 2. 교육원 노후시설물 성능개선공사 가. 빌딩자동제어 설치공사 • 179,000,000원*1식=179,000천원 나. 피트내 오배수 배관 교체 • 272,000,000원*1식=272,000천원 다. 대강당옆 복도 바닥교체 • 6,655,000원*1식=6,655천원

* 자료 : 감사원 제출 자료

□ 그런데 2023년도 ‘본원 노후시설 등 성능개선’ 공사비의 이월액은 공사비 예산 3억 2,300만원 중 48%에 해당하는 1억 5,600만원 이고, ‘교육원 노후시설 등 성능개선’ 공사비의 이월액은 4억 2,000만원 중 55%에 해당하는 2억 3,200만원임.

2024년도의 경우 7월말 현재 ‘본원 노후시설 등 성능개선’ 공사비는 전년도 이월액을 제외한 예산현액 3억 2,000만원 중 6,500만원이

집행되어 집행률이 20%, ‘교육원 노후시설 등 성능개선’ 공사비는 전년도 이월액을 제외한 예산현액 2억 400만원 중 7,000만원이 집행되어 집행률이 34%로 낮은 수준임.

□ 따라서 이월액의 발생 및 집행 실적이 저조한 점과 내년도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여 일부 감액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2023년 및 2024년 ‘본원 노후시설 등 성능개선 및 교육원 노후시설 등 성능개선 공사비’ 집행내역>

(단위: 백만 원)

구 분	2023				2024('24.7월말)					2025 예산안
	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예산 현액	집행액	
• 본원 노후시설 등 성능개선 공사비 (420-03)	323	142	156	25	320	476	188	320	65	1,046
• 교육원 노후시설 등 성능개선 공사비 (420-03)	420	160	232	28	204	436	305	204	70	458

* 자료 : 감사원 제출 자료

6. 전산운영경비(정보화) : 차세대 업무포털시스템(OASYS) 구축 관련 예산의 면밀한 관리 필요

가. 편성 현황

- ‘전산운영경비(정보화, 1134-309)’는 감사자료분석시스템, 업무포털 시스템(OASYS), 공공감사정보시스템 및 사이버보안센터를 안정적으로 구축·운영하고 사무용 전산기기를 최적의 가동상태로 유지하여 업무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임.
- 2025년도 ‘전산운영경비(정보화, 1134-309)’ 예산안은 2024년도 예산 158억 6,500만원 대비 2억 4,600만원(1.6%) 증액된 161억 1,1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구체적인 내역은 ‘차세대 업무포털시스템(OASYS) 시스템 구축’ 2차년도 예산 128억 5,400만원, ‘감사자료 분석시스템’ 운영 17억 8,100만원, ‘공공감사 정보시스템’ 운영 5억 3,900만원, ‘사이버보안센터’ 운영 9억 3,600만원 등임.

<2024년도 ‘전산운영경비(정보화)’ 편성내역>

(단위: 백만 원, %)

사 업 명	2023년 결산	2024년 본예산(A)	2025년		증감 (B-A)	(B-A)/A
			요구안	조정안(B)		
전산운영경비	8,757	15,865	24,414	16,111	246	1.6

* 자료 : 감사원 제출 자료

<2024년도 ‘전산운영경비(정보화)’ 편성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회계연도 결산			2024 본예산	2025 예산안
	예산현액	집행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	8,985	8,757	173	15,865	16,111
· 감사자료분석시스템 구축·운영	1,803	1,768	35	1,810	1,781
· OASYS 구축·운영	2,411	2,323	88	12,822	12,854
· 공공감사정보시스템 구축·운영	3,828	3,760	13	297	540
· 사이버보안센터 구축·운영	943	906	37	936	936

구 분	2023 결산					2024 본예산	2025 예산안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	이월액	불용액		
· OASYS 구축·운영	2,290	2,411	2,323	-	88	12,822	12,854
- 일반수용비(210-01)	235	233	213	-	20	234	213
- 공공요금및제세(210-02)	143	143	121	-	22	133	121
- 임차료(210-07)	-	-	-	-	-	-	115
- 시설장비유지비(210-09)	373	373	328	-	45	374	-
- 관리용역비(210-15)	1,288	1,288	1,288	-	-	1,288	1,548
- 일반연구비(260-01)	-	123	123	-	-	429	7,067
- 공사비(420-03)	-	-	-	-	-	88	-
- 자산취득비(430-01)	251	251	250	-	1	10,276	3,790

* 자료 : 감사원 제출 자료

나. 차세대 업무포털시스템(OASYS) 구축 관련 예산의 면밀한 관리 필요

- 차세대 업무포털시스템(OASYS) 구축·운영은 전자감사관리시스템, 실적관리시스템, 성과관리시스템 및 홈페이지 등의 안정적인 구축·운영 등을 목적으로 하는 내역사업임.
- 감사원은 2014년부터 활용해오고 있는 OASYS 운영서버의 노후화에 따른 성능저하 문제를 해소하고 변화된 IT 환경에 따라 업무 방식을 혁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차세대 OASYS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을 2023년도에 수립하였고, 이 계획을 근거로 ‘차세대 업무포털시스템(OASYS) 구축’을 위한 예산을 2024년도부터 편성한 바 있음.
- 감사원은 2024년에 ‘차세대 업무포털시스템(OASYS) 구축’과 관련하여 당초에는 단년도 사업으로 계획하고 기획재정부에 예산을 요구하였으나, 정부 예산심의 단계에서 2024년(1차년도)에는 인프라 구축, 2025년(2차년도)에는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조정되었음.
- 이에 감사원은 2024년(1차년도)에는 자료유출 가능성을 전면 차단하고, 비대면 업무환경 대응 및 전자감사시스템 오류와 속도 지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차세대 원격 업무환경(VDI)²⁴⁾을 조성하는

24) 데스크톱 가상화, 어느 PC에서나 중앙서버의 개인 가상 데스크톱에 바로 접속해 업무처리(자료 저장, OASYS 이용 등) 가능

인프라 구축 등을 위한 경비로 총 105억 2,400만원²⁵⁾의 예산을 편성하여 추진하기로 하였고,

2025년(2차년도) 예산안에는 비정형 자료(문서형태)의 분석·활용 기능을 마련하고, 축적된 감사보고서 등을 감사기획 및 보고서 작성 등에 활용하여 업무 효율성을 강화하며, 맞춤형 포털 등의 편의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비용 등을 위한 경비로 106억 8,800만원²⁶⁾을 산정하였음.

25) 일반연구비: 감리비(3억 8,200만원), 개인정보영향평가(4,600만원)

공사비: 전산센터 구축(8,800만원),

자산취득비: 하드웨어 구입(80억 2,700만원), 소프트웨어 구입(12억 700만원), 전산센터 구축(7억 2,900만원)
조달수수료: 4,500만원임.

26) 일반연구비: 차세대 OASYS 개발비(64억 9,800만원), 감리비(4억 8,600만원), 개인정보영향평가(8,300만원)

자산취득비: 하드웨어 구입(3억 5,200만원), 소프트웨어 구입(31억 1,600만원)

조달수수료: 3,800만원임.

<2024년 예산 및 2025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 원)

구 분		기존 시스템 대비 변경 내역	2024 요구	예산		
				'24년	'25년 (안)	비목
디지털 감사시스템 구축		· 기존 전자감사시스템의 한글문서 작성 및 결재 기능에서 벗어나 데이터 분석· 활용 시스템으로 전면 재구축	4,841	-	4,349	자산취득비, 일반연구비
원내 행정시스템 재구축		· 기존에 분산·혼재되어 있는 고유업무/ 업무지원 기능을 재분류 및 개편	4,657	-	4,505	자산취득비, 일반연구비
사용자 맞춤형 포털 구축		· 업무별/직급별로 맞춤형 정보를 볼 수 있도록 재구축 등	3,824	-	760	자산취득비, 일반연구비
사무실 임대료		· 사무실 임대료	300	-	115	임차료
정보 시스 템 클라 우드 전환	클 라 우 드 전환	· 노후 장비를 클라우드 기반으로 전면 교체	2,565	-	-*	자산취득비
	데 스 크 톱 가상 화(VDI)	· 언제 어디서나 가상 업무망 PC에 접 속할 수 있는 차세대 원격 업무환경 구축	4,298	4,298	-	자산취득비
	네트워크 재구축	· VDI 도입 및 업무 효율성을 위해 속도 개선	4,826	4,645	-	자산취득비
전산센터 구축		· 노후화된 서버실 통합, 설비 보완	1,393	1,020	352	자산취득비
			88	88	-	공사비
기타		· 감리비, 개인정보영향평가 비용	945	428	569	일반연구비
		· 조달수수료	96	44	38	자산취득비
합 계			27,833	10,524	10,688	
				21,212		

- '클라우드 전환' 비용(ISP 산출 2,565백만원)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에 설치되는 감사원 전산
장비 도입 관련 비용으로 국정자원에서 '25년 예산으로 요구하였으며 위 표에는 미포함

* 감사원은 당초 '자산취득비'로 예산을 요구하였으나, 국정자원은 장비 '임차료'로 예산에 반영하였고,
임차료는 국정자원에서 만 5년에 걸쳐 분기별로 집행(총 20회, 1,300백만원)할 예정이며 '25년에는 1회차
(4/4분기)에 해당하는 65백만원이 국정자원 예산에 반영되어 있음)

* 자료 : 감사원 제출 자료

<2025년 차세대 OASYS 구축 예산안 편성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비 목	내 역	예산액 (백만원)	산출근거
임차료 (210-07)	시스템 구축 사무실 임차료	115	- 월 임차료(11,500천원) 및 사업기간(10개월) 적용
일반연구비 (260-01)	차세대 OASYS 개발비	6,498	- FP 방식 개발비 5,858백만원 :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를 적용해 산출한 기능점수 및 단가를 적용해 산출 - MM 방식 개발비 640백만원 : 홈페이지 구축(디자인 등 콘텐츠 관련)과 같이 FP방식 개발비 산정이 곤란한 개발은 투입인력 및 기간을 고려해 산출
	감리비	486	- 개발비, HW/SW 구입비를 기초로 '정보시스템 감리대가 산정 기준'을 적용하여 산출
	개인정보 영향평가	83	- 정보보호 컨설턴트 임금, ISP 수립시 산출된 컨설팅 업무량을 기초로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가산정 기준'을 적용해 산출
자산취득비 (430-01)	HW 구입	352	WEB/WAS/DB 서버
	SW 구입	3,116	- 감사보고서 분석시스템 374백만원 - 법령정보 수집/분석 172백만원 - 전자문서 관리 1,881백만원 - 공통 SW 670백만원 - 전자팩스 솔루션 19백만원
	조달수수료	38	- 당초 요구한 총사업비에 조달수수료율을 적용해 산출
합계		10,688	

* 자료 : 감사원 제출 자료

□ 2024년도 차세대 업무포털시스템(OASYS) 구축 인프라 구축 예산 105억 2,400만원 중 2024년 10월 현재 집행액은 440만원이며, 이는 차세대 업무포털시스템(OASYS) 구축사업 과업심의위원회²⁷⁾ 외부위원 수당을 지급한 것임.

□ 이에 대해 감사원은 집행액이 저조하나, 2024년 8월 말 ‘차세대 업무포털시스템(OASYS) 구축’을 위한 네트워크 및 인프라 구축 사업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음. 이에 따른 구축 사업 기간은 ‘24. 8. 29. ~ ‘25. 4. 26. 이고, 사업비는 70억 2,400만원임.

<‘차세대 업무포털시스템(OASYS) 구축’을 위한 네트워크 및 인프라 구축 사업 계약 내역>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계약일	예산액	계약 금액	집행액	이월 예상액	계약 기간	계약 업체	계약 방식
차세대 OASYS 구축을 위한 ‘감사원 네트워크 고도화 및 정보보안 인프라 구축’ 사업	’24.8.29.	10,524	7,024	4	2,107	’24.8.29. ~’25.4.26.	KT 컨소시엄	경쟁 입찰

* 자료 : 감사원 제출 자료

27)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의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이하 “과업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1. 과업내용의 확정

2. 과업내용 변경의 확정 및 이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

② 국가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1항에 따른 심의결과를 계약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등의 장과 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는 과업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내용 변경이 필요한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과업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을 수용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과업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과업내용의 확정·변경 및 개최 요청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그 밖에 동 사업 예산으로 10월 말 중에 상용 소프트웨어를 구매할 예정이라고 함. 그러나 차세대 업무포털시스템(OASYS) 네트워크 및 인프라 사업은 8월 말에 체결됨에 따라 사업비의 30%인 21억 700만원의 이월이 예상되는 등 사업 지연이 예상되고 있음.
- 따라서 2025년도(2차년도) 예산안의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면밀한 사업계획과 집행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이에 대해 감사원은 관계 기관과 협의 지연 등으로 2024년도 사업은 착수가 늦어졌으나 2025년도의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은 인프라 구축 사업과 병행이 가능하여 2025년도 예산 집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 그러나 그간 감사원의 전산운영경비(정보화) 사업이 차년도로 이월되는 상황이 반복되어 법사위 예산안 및 결산 심사 시 지속적으로 지적을 받아왔음.²⁸⁾
- 또한, 2025년도 상반기에는 2024년에서 이월된 사업이 추진될 것이

28) * 2023회계연도 법사위 예산검토보고서에서는 공공감사정보시스템의 재구축을 위해 편성한 2022년(1차 연도분) 과다한 이월이 예상되는 상황으로 사업의 지연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과 함께 2023년도(2차 연도) 구축예산의 적정성 및 적기 집행 가능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음.

* 2022회계연도 법제사법위원회 결산 예비심사보고서에서는 2022년에 차세대 업무포털시스템(OASYS)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수립 용역계약의 연도 말 체결 및 이월 발생에 대한 지적과 함께 계약 발주가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음

* 전산운영경비 세부사업의 내역사업으로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추진된 감사자료분석시스템 사업에 대해 연례적인 이월액 발생으로 인한 집행을 저조 등을 사유로 국회는 결산 심사시 사업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 회계연도 내에 집행할 수 있도록 주의할 것을 시정요구한 바 있음.

- 2015, 2016 및 2019회계연도 법제사법위원회 결산 예비심사보고서에서는 해당 사업에 대해 시정요구 유형 중 ‘주의’ 조치가 주어졌고, 2017회계연도 법제사법위원회 검토의견에서도 해당 사업의 연례적인 이월이 지적되었음. 또한 2018회계연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검토의견에서도 해당 사업의 연례적 이월 발생에 대한 지적과 함께 계약 발주가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음.

예상되므로 이로 인해 2025년도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사업계획을
치밀하게 수립하고 집행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7. 국제교류협력강화 : 국제기구 외부감사인 진출 추진 관련 국외업무여비 감액조정 필요

가. 편성 현황

- ‘국제교류협력강화(1135-322)’ 사업은 각종 국제회의의 개최 · 참석 및 외국 감사원과의 교류협력을 통해 감사역량을 강화하고 우리나라 감사원의 국제적 위상 및 영향력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도 예산액 8억 5,400만원보다 2억 800만원이 증액(24.4%)된 10억 6,200만원이 편성되었음.
- 주요 내역은 국제기구 외부감사인 진출 추진 관련 국외업무여비 1억 2,500만원 증액, ASOSAI WGCMA 회의개최 관련 일반용역비 1억 3,400만원 증액 등임.

<2025년도 국제교류협력강화 편성내역>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도 결산	2024년도 예산		2025년도 예산안		증 감	
		본예산	추경(A)	요구	조정(B)	(B-A)	%
국제교류협력강화	988	854	854	1,554	1,062	208	24.4

사 업 명	2023회계연도 결산			2024년도 예산	2025년도 예산안
	예산현액	집행액	불용액		
○ 비목별 분류	1,001	988	13	854	1,062
- 일반수용비(210-01)	131	129	2	115	107
- 공공요금및제세(210-02)	5	5	-	7	10
- 임차료(210-07)	53	53	-	47	73
- 시설장치유지비(210-09)	2	2	-	3	3
- 일반용역비(210-14)	170	169	1	136	134
- 국내여비(220-01)	17	15	2	-	-
- 국외업무여비(220-02)	467	460	7	354	553
- 사업추진비(240-01)	18	18	-	20	14
- 관서업무추진비(240-02)	30	29	1	50	50
- 국제부담금(340-02)	108	108	-	122	118

* 자료 : 감사원

나. 국제기구 외부감사인 진출 추진 관련 국외업무여비 감액조정 필요

- ‘국제기구 외부감사인 진출 추진’ 사업²⁹⁾은 감사원이 현재 수행 중인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CC) 외부감사인 임기가 2025년에 종료됨에 따라 타 국제기구의 외부감사인 선임을 새롭게 추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5년 예산안으로 일반수용비 400만원, 국외업무여비 1억 2,500만원, 총 1억 2,9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음.

<국제기구 외부감사인 진출 추진 사업 세부 편성내역>

(단위: 천원)

비 목	내 역	예산액
일반수용비(210-10)	회의자료 및 발간물 제작 등	4,000
국외업무여비(220-02)	국제기구 외부감사인 진출 추진(캐나다)	51,340
	국제기구 외부감사인 진출 추진(이탈리아)	36,831
	국제기구 외부감사인 진출 추진(오스트리아)	36,829
	소 계	125,000
합 계		129,000

* 자료 : 감사원 제출자료 재구성

- 이 중 국외업무여비는 국제기구별 외부감사인 선거 참석 등을 위한 경비로, 감사원은 국제기구 내 우리나라의 영향력과 조직 규모, 필요 감사인력 등을 고려하여 3개 국제기구(ICAO, FAO, UNIDO)를 선정하고 외부감사인 선거에 각각 입후보할 예정으로서 해당 국제기구가 위치한 3개 국가(캐나다, 이탈리아, 오스트리아)의 국외출장을 계획하고 동 예산을 편성한 것임.

29) 국제교류협력강화(1135-322) 사업의 내내역 사업으로서, 내역 사업인 “기타 국제교류” 사업 내에 편성되어 있음.

<외부감사인 선거 추진 관련 국제기구 개요>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 (영향력) 국제민간항공 국제기준 제정 및 정책 결정, UN에서 가장 권한이 강한 기관 중 하나
- (우리나라 위상) ICAO 내 전체 7위의 분담금 부담국(3.16%), 이사국 8연임
- (조직규모·예산) 700여 명, 약 1,165억원
- (본부위치) 캐나다 몬트리올
- (소관 부처) 국토교통부
- (선거일정) 스위스의 후임('20년부터 연임)으로 '25년 선출 예정(임기 3년)
- (선정절차) 기술제안서 심사 결과 총점 3위 내 후보국들의 구두 발표('25년 초 예상) → ICAO 이사회에서 외부감사인 수임 의결('25년 6월 예정) → ICAO 총회에서 외부감사인 수임 승인('25년 10월 예정)

□ 세계식량기구(FAO)

- (영향력) 전 세계 식량 문제 해결과 농촌 개발 역할 담당
- (우리나라 위상) '89년 이래 13회 연속 이사국으로 활동, 전체 8위 분담금 부담(3.534%)
- (조직규모·예산) 3,258명(본부, 사무소), 40억 달러(약 5조원)
- (본부위치) 이탈리아 로마
- (소관 부처) 농림축산식품부
- (선거일정) 인도의 후임으로 '25. 5월 선거 예정(임기: '26~'32년)이며 구체적인 일정 및 상세절차는 미정

□ 유엔산업개발기구(UNIDO)

- (영향력) 공업개발 관련 정책 수립, 개도국에 대한 기술협력 제공 등
- (우리나라 위상) '88년 이래 10회 연속 이사국, 전체 7위 분담금 부담(3.731%)
- (조직규모·예산) 680여명, 1,200억 여원
- (본부위치) 오스트리아 빈
- (선거일정) 이집트 후임으로 '25. 12월 선거 예정(임기 2년, '26. 7월~'28. 6월)이며 구체적인 일정 및 상세절차는 미정

* 자료 : 감사원

- 일반적으로 국제기구 외부감사인 선정방식은 대부분 선거로 이루어지고 있는데³⁰⁾, 이 경우 입후보국의 자질과 능력도 중요하나 자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투표하는 국제기구 선거 특성상 회원국 간 관계가 선거 결과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므로 국가 차원에서의 집중적이고 전방위적인 외교교섭을 통한 지지표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음.
- 이에 국제기구 선거를 총괄하는 외교부는 매년 연말 국제기구선거조정회의를 개최하여 전 부처가 계획 중인 차년도 국제기구 선거를 대상으로 우선순위(중점선거, 주요선거, 일반선거)를 정하고 교섭수준의 차등³¹⁾을 두고 있는바, 실질적으로는 국가이익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소수의 중점 또는 주요선거를 선별하고 이에 교섭력을 집중하고 있는 상황임.

30) 감사원은 국제기구 외부감사인 선거방식은 대부분 선거방식이고 ICAO는 이번에 후임 외부감사인 수입 방식으로 제안서(기술·재정) 평가 방식을 채택하였다고 설명함.

31) 「국제기구선거조정회의 개최에 관한 규정」

제6조(선거의 우선순위 결정 기준) 선거조정회의에서는 상정된 선거 현황을 확인하고, 선거별 중요도, 진출 필요성, 국가이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정도, 당선 가능성, 경합 정도, 여타 선거 입후보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아래 각 호와 같이 교섭 수준을 결정한다.

1. 중점 선거 : 국가 이익에 기여하는 정도가 매우 큰 선거로 진출 필요성이 가장 높은 소수의 선거
2. 주요 선거 : 국가 이익에 기여하는 정도가 비교적 큰 선거로 진출 필요성이 있으며 경합이 예상되는 선거
3. 일반 선거 : 진출 필요성이 주요 선거에 비해 낮거나, 중요도가 낮으면서 무경합이 유지될 가능성이 비교적 높은 선거

제7조(우선순위별 교섭수준 결정) 원칙적으로 동일 선거 내 상호지지를 우선적으로 추진하되, 제6조에 따른 선거의 우선순위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교섭수준을 결정한다.

1. 중점선거 : 거점공관 및 전체 회원국 소재 재외공관을 통해 지지 교섭하며, 주요·일반선거보다 상호 및 교환지지를 우선적으로 추진
2. 주요선거 : 거점공관을 통한 교섭을 우선 실시하되, 중점선거에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필요시 전체 회원국 소재 재외공관을 통한 교섭 및 상호·교환지지 추진 검토
3. 일반선거: 가급적 무경합 상황을 유지하는데 주력하되, 여건을 보아가며 필요시 거점공관을 통한 교섭 및 상호지지 추진 검토, 교환지지는 최소화

- 즉, 국제기구 선거는 입후보 국가간 상호지지, 교환지지가 필수적이므로 우리나라가 국제기구 선거에 과다 입후보할 경우 지지표 분산으로 오히려 중요한 선거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은바,³²⁾ 각 부처의 입후보 난립에 따른 교섭력 분산을 방지하고 선택과 집중 전략을 통해 체계적인 교섭을 추진하기 위한 것임.
- 이에 따라 감사원은 올해 연말 3개 국제기구에 대한 선거계획을 외교부에 제출할 예정으로, 해당 선거가 2025년 주요선거로 분류될 수 있도록 외교부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함.
- 그런데 매년 국제기구선거조정회의를 통해 결정되는 우리나라의 차년도 국제기구 전체 선거 수는 통상적으로 약 10회~15회³³⁾이라는 점에서 감사원 단독으로 2025년 한해 동안 3개 선거를 추진하는 것은 과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국제기구 선거 전략에도 부합하지 않다고 보여짐.
- 특히 국제기구 외부감사인 선거는 타 국가간 경합이 예상되므로 국제기구 진출 추진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해당 선거가 중점 또는 주요선거에 반드시 포함될 필요성이 있는바,

교섭력 분산 방지를 위해 중점 및 주요선거의 수는 매해 줄어드는

32) 실제로 한국은 2022년 10월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선거에서 탈락한 바 있는데, 이는 2006년 인권이사회가 신설된 후 처음으로 우리나라가 이사국 진출에 실패한 사례임. 당시 한국은 지나치게 많은 국제기구 선거에 출마하면서 외교력이 분산돼 유엔 인권이사국 선거에 집중하지 못했던 것이 가장 큰 탈락 원인으로 지적되었음. 즉, 국제기구 선거 특성상 입후보 국가간 상호지지, 교환지지를 하는데 우리나라의 과도한 선거 입후보로 인해 상호 지지 가용표를 조기에 소진한 것이라는 지적임.

33) 국제기구선거조정회의서 결정하는 우리나라 국제기구 입후보 선거 수는 2020년 11개, 2021년 10개(중점 1개, 주요 3개, 일반 6개), 2022년 14개(중점 4개, 주요 6개, 일반 4개)로 언론에 보도되었고 외교부는 2023년 및 2024년도 선거 수를 정확히 밝힐 수 없으나 전체 약 10~15회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함.

추세³⁴⁾라는 점을 고려하면 감사원이 추진하는 3개의 국제기구 선거 모두 중점 또는 주요선거에 포함될 수 있을지 의문임.

- 또한 ICAO의 경우 2025년 하반기 총회에서 이사국(국토교통부 소관) 선거가 예정되어 있어 교섭활동이 중복될 우려가 있고, 현재 국제기구 감사업무를 전담하는 부서가 1개과(국제기구 감사과) 11명이라는 점을 고려³⁵⁾하면 3개 선거에 동시에 선임 되더라도 감사인력 등의 문제로 모든 국제기구의 외부감사를 수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이는바,
 - 수행 가능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3개 국제기구 선거에 소요되는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사업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 소요를 요구” 하도록 하고 있는 「2025년도 예산안 편성 세부지침³⁶⁾」에도 부합하지 않다고 보여짐.
- 따라서 감사원이 2025년 연간 3개 국제기구의 외부감사인 선거 입후보를 계획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보이므로 이를 전제로 편성한 국외업무여비를 일부 감액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34) 외교부 설명에 따르면 2022년 10월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선거 탈락 이후 교섭력 분산 방지를 위해 중점 및 주요선거는 최소한으로 정하는 기조로 가고 있으며 그 수가 매해 줄어드는 추세라고 함. .

35) 국제기구 감사는 국제기구감사기준에 대한 지식과 영어에 대한 전문성을 요하고 현지에서 직접 감사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장기간 소요되는바, 실제로 현재 감사원은 국제기구감사과 내 직원(11명)이 ICC 외부감사인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상황임.

36)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p. 5

8. 감사기구 역량강화(ODA) : 면밀한 산출을 통한 일반용역비 규모의 적정성 검토 필요

가. 편성 현황

- ‘감사기구 역량강화(ODA)(1135-323)’ 사업은 개발도상국 내 감사원의 관리자금 직원을 초청하여 우리나라가 구축한 감사 시스템 및 감사기법을 전파하는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과 동일한 2억 9,2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25년도 감사기구 역량강화(ODA) 편성내역>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도 결산	2024년도 예산		2025년도 예산안		증 감	
		본예산	추경(A)	요구	조정(B)	(B-A)	%
감사기구 역량강화(ODA)	294	292	292	301	292	-	-

사업명	2023회계연도 결산			2024년도 예산	2025년도 예산안
	예산현액	집행액	불용액		
○ 비목별 분류	297	294	3	292	292
- 일반수용비(210-01)	51	49	2	46	46
- 일반용역비(210-14)	242	242	-	242	242
- 사업추진비(240-01)	4	3	1	4	4

* 자료 : 감사원

나. 면밀한 산출을 통한 일반용역비 규모의 적정성 검토 필요

- 감사원은 2025년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다국가(아제르바이잔, 키르기스스탄)를 연수대상 국가로 선정하고 1개국당 12인씩 총 36명을 초청하여 13박 14일 일정으로 연수를 추진할 계획으로, 교육과 관련된 주요 업무 이외의 각종 부대 업무³⁷⁾를 외부업체에 위탁하기 위하여 일반용역비 2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는바, 세부 산출내역은 다음과 같음.

<일반용역비 세부 산출내역>

(단위: 천원)

대상국	산 출 근 거	예산액
말레이시아	• 항공료: 1,665,000원*12명=	19,980
	• 숙박비: 150,000원*12명*10박=	18,000
	• 식비: 50,000원*12명*14일=	8,400
	• 강의실 임차: 1,000,000원*6일=	6,000
	• 차량 및 장비등 임차: 400,000원*6일=	2,400
	• 보조인력 운영: 160,000*2명*12일=	3,840
	• 보험 등 기타경비: 200,000원*12명=	2,400
	소 계	61,020
방글라데시	• 항공료: 3,850,000원*12명=	46,200
	• 숙박비: 150,000원*12명*10박=	18,000
	• 식비: 50,000원*12명*14일=	8,400
	• 강의실 임차: 1,000,000원*6일=	6,000
	• 차량 및 장비등 임차: 400,000원*6일=	2,400

37) 출입국지원, 연수장소 및 식사제공, 연수과정 설계지원, 연수생 관리, 콘텐츠 제작 지원, 외부활동 운영 등

대상국	산 출 근 거	예산액
	• 보조인력 운영: 160,000*2명*12일=	3,840
	• 보험 등 기타경비: 200,000원*12명=	2,400
	소 계	87,240
다국가 (아제르바이잔, 키르기스스탄)	• 항공료: 4,400,000원*12명=	52,800
	• 숙박비: 150,000원*12명*10박=	18,000
	• 식비: 50,000원*12명*14일=	8,400
	• 강의실 임차: 1,000,000원*6일=	6,000
	• 차량 및 장비등 임차: 400,000원*6일=	2,400
	• 보조인력 운영: 160,000*2명*12일=	3,840
	• 보험 등 기타경비: 200,000원*12명=	2,400
	소 계	93,840
총 합		242,000

* 자료 : 감사원

- 「2025년도 예산안 편성 세부지침」³⁸⁾에 따르면 일반용역비는 「예정가격 작성기준」에 따라 소요비용을 산정하여야 하는데,
- 동 기준에 따르면 일반용역비 예산 항목은 인건비, 경비(여비, 임차료, 회의비 등), 일반관리비, 이윤 등으로 구성³⁹⁾되고 통상적으로 인건비 및 경비가 많이 산정될수록 용역업체에 지급되는

38)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p. 232

39)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30조(기타용역의 원가계산) ② 원가계산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기타의 용역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3조 내지 제29조에 규정된 원가계산기준에 준하여 원가계산할 수 있다.

제24조(원가계산비목) 원가계산은 노무비(이하 "인건비"라 한다), 경비, 일반관리비등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다만, 제23조제1호나목 및 다목에 의한 공동연구형 용역 및 자문형 용역의 경우에는 경비항목 중 최소한의 필요항목만 계상하고 일반관리비는 계상하지 아니한다.

제27조(경비) 경비는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 내용의 여비, 유인물비, 전산처리비, 시약 및 연구용 재료비, 회의비, 임차료, 교통통신비 및 감가상각비를 말한다.

1. ~ 8. (생략)

이윤 등도 커져 전체 일반용역비 예산의 규모가 확대⁴⁰⁾되는 구조임.

- 특히 동 사업은 초청연수라는 특성상 경비 중 “국가별 연수생 초청을 위한 항공료”가 1억 1,900만원으로 일반용역비 예산액 중 많은 비중(49.2%)을 차지하고 있는바, 일반용역비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보다 면밀한 예산 산출을 통해 해당 경비가 과도하게 산정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 그런데 감사원은 항공료 단가를 「2025년도 예산안 편성 세부 지침」에 따른 단가 대비 높게 책정함으로써 일반용역비 전체 예산액이 과다 편성된 측면이 있다고 보여짐.
 - 「2025년도 예산안 편성 세부지침」은 항공료를 책정하는 경우 참고할 수 있도록 일부 국가의 항공료 단가를 명시⁴¹⁾하고 있는데, 원칙적으로 동 지침상 해당 국가의 단가를 기준으로 하되 이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국가의 경우 가장 근접한 국가의 항공료 단가를 기준으로 책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임.
 - 그러나 동 사업의 일반용역비 산출내역 중 항공료 부분을 살펴

40) 용역업체에 지급되는 이윤 등 부대비용은 필요경비(인건비, 경비) 일반관리비를 합친 금액의 일정비율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어 산출된 필요경비가 커질수록 이윤 등 부대비용도 커지고, 이에 따라 전체 예산의 규모도 확대됨.

※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28조(일반관리비 등) ① 일반관리비는 시행규칙 제8조에 규정된 일반관리비율을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② 이윤은 영업이익을 말하며, 인건비, 경비 및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에 시행규칙 제8조에서 정한 이윤율을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41)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p. 311

보면 3개 국가에 대한 항공료 단가 모두 지침상에 명시된 해당 국가 또는 근접 국가의 항공료 단가보다 지나치게 높게 책정됨으로써 전체 인원에 대한 항공료가 과다 산정된 것으로 보임.

- 다만, 항공료는 그 특성상 실시간 금액이 변동되므로 단가를 일률적으로 정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을 것이나, 그럼에도 지침상 항공료 단가보다 2배 이상 차이나는 금액으로 책정한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음.

<편성단가 및 지침상 단가 적용 항공료 비교>

(단위: 천원)

구 분	편성 단가 적용(A)		지침상 단가 적용(B)		편차 (A-B)	비 고
	산출내역	금액	산출내역	금액		
말레이시아	1,665 *12명	19,980	1,513 *12명	18,156	1,824	
방글라데시	3,850 *12명	46,200	1,531 *12명	18,372	27,828	미얀마 적용
다국가 (아제르바이잔 키르기스스탄)	4,400 *12명	52,800	2,913 *12명	34,956	17,844	튀르키예 및 우즈베키스탄 42) 중간값 적용
합 계		118,980	합 계	71,484	47,496	

* 인천(ICN), 왕복운임, ECONOMY CLASS⁴³⁾ 기준

42) 튀르키예: 3,764,700원, 우즈베키스탄: 2,061,200원

43) 「2025년도 예산안 편성 세부지침」(p.240)에 따르면 「실무인력 초청연수」의 경우 원칙적으로 국외여비 2등 정액 항공임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일반용역비 산출내역 중 항공료에 해당하는 경비가 다소 과다하게 산정된 것으로 보이는바, 면밀한 산출을 통해 일반용역비 예산액 규모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